

이번에 달라진 法人稅 신고기한은?

문 1985년 12월 23일부로 租稅減免規制法 중 學校法人이 운영하는 醫科大學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條項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K大學病院)

답 (1) 租稅減免規制法 제49조 제3항의(寄附金 등의 損金算入) 조항을 보면 종전에는 『私立學校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學校法人과... (中略)...이 당해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所得(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所得은 제외한다)을 그 法人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 또는... (中略)...을 위하여 지출하는 寄附金は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改正時 關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84년 1·2월호 稅務相談時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의 경우 이익이 나면 소득 金額의 60%까지만 學校法人에 轉出하여 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法人에 모두 轉출하면 6천만원만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천만원은 益金算入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法人稅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關호 안의 但書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1억원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3年前의 法人稅法の 改正前과 비슷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전액을 法人에 轉출한 것으로 장부상에 나타내어야만 損金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앞에서와 같이 처리할 경우 병원에서 固定資産에 투자하고자 하나 財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문제는 84년 4월호에서 상담해 드린 바와 같이 土地·建物 등 法人의 基本財産의 소유권이나 계약권은 法人의 理事長이 갖고 있으므로 法人이 구입하고 이를 本·支店會計와 같은 方法에 의하여 병원에 대체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學校會計에서는 法人·學校·收益事業체 등의 재무제표가 일단 개별적으로 작성되기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學校法人의 전체 재무제표로 합산되는 것이므로 年初에는 本·支店합계방식으로 學校와 收益事業체에 각각 분리시켜 주었다가 年末에는 합산시키는 방법을 쓰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하에서는 法人이 구입해준 고정자산을 病院이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에 의하여 받아서 감가상각도 할 수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의료기기 ××× (대) 법인 ×××

만약 研究費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료

상담 : 鄭 基 善 <公認會計士 · 서울대병원부설 병원연구소 자문위원>

외 수익의 발생으로 회계처리되나 연도 중에 실제로 동액의 연구비가 지출된다면 이 역시 법인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연구비 수령시)

(차) 현금예금 ××× (대) 의료외수익 ×××

(연구비 지급시)

(차) 의학교육연구비 ×××

(대) 현금예금 ×××

문 이번에 法人稅 申告期限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경기도 S병원>

답 (1) 法人稅法 제26조(과세표준의 申告) 제1항에 의하면 內國法人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終了日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사업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된 날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3장이 改正되어 45일이 60일로 15일간만 연장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醫療法人이나 財團法人 등의 法人으로 되어있는 병원은 필수적으로 公認會計士나 稅務士에 의하여 세무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12월 31일이 결산일인 法人은 종래에는 1986년 3월 16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된 날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병원이 86년 1월 31일에 결산을 확정하고 신문에도 동일자로 대차대조표를 公表하였다면 60일 이내에 결산이 확정되었으므로 1월 31일로부터 15일이 되는 2월 15일까지 法人稅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法人稅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稅로 징수합니다. 만약 결손이 나서 法人稅額이 없을 경우에는 醫療收益의 1,000분의 1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을 빨리 마쳐서 재무제표가 일찍 확정되더라도 理事會 會議錄과 신문공고는 86년 3월 2일 이후로 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